

공 보

제632호 2018. 2. 14.(수)

| | |
|--------|--------|
| 선 결 | 기관 의 장 |
| | |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20호 거창군유임야 관리규정 폐지규정(통보) 3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20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24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7
 거창군 고시 제2018-21호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지정(변경)·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9
 거창군 고시 제2018-2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9
 거창군 거창읍 고시 제201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21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232호 전기사업(태양광발전)양수 인가 공고(내동5,6,7 태양광발전소) 22
 거창군 공고 제2018-234호 2018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모집 재공고 24
 거창군 공고 제2018-235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6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
 고 32
 거창군 공고 제2018-237호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5

거창군 공고 제2018-242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공고 알림(브이 태양광발전소) 38
거창군 공고 제2018-251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9
거창군 가조면 공고 제2018-1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 47

| | | | | | | | | | |
|----------------|--|--|--|--|--|--|--|--|--|
| 회 관 |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유임야 관리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18년 2월 14일

거창군 훈령 제420호

거창군유임야 관리규정 폐지규정

거창군유임야 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유임야 관리규정」 폐지 계획

최근 군유임야 관련 감사에서 사용수익(대부) 허가와 관련된 지적 사항이 속출하여, 당시 적용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거창군유임야 관리규정」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현 실태 및 문제점

- 「거창군유임야 관리규정」은 군유임야의 효율적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 9. 11. 훈령 제227호로 제정되었으나
-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일원화되었고, 2009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또한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거창군유임야 관리규정」이 폐지되어야 함
- 이 규정은 제정 시 상위법 근거가 없고, 관련법령과 비교했을 때 근거가 없는 사항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다시 규정된 부분이 많음

| 거창군유임야 관리규정 【현 행】 | 검토 사항 |
|-------------------|-------------------------|
| 제1조 (목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음 |
| 제2조 (적용 대상 재산) | |
| 제3조 (적용범위) | |
| 제4조 (재산종류 구분) | |
| 제5조 (재산관리관 지정)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 |

| | |
|-----------------------------------------------------------------------------------------------------------------------------------------------------------------------------------------------------------|-----------------------------------------------------------------------------------------------------------------|
| 제6조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 례」에 명시되어 있음 |
| 제2장 대부 또는 사용허가 제7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목적 등) 제8조 (대부·사용허가 등의 절차) 제9조 (대부기간) 제10조 (명의 변경) 제11조 (권리양도의 허가) 제12조 (대부취소) 제13조 (대부료의 반환 및 보상) 제14조 (대부지 반납) 제15조 (대부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지장목제거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 례」에 명시되어 있음 |
| 제 3 장 분수림의 설정 제 16조 (분수림의 설정) ~ 제 33조 (사후관리) | ○ 분수림은 국유림에만 설정된 사 항으로 2004년 (구)산림법이 개정되어 분수림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 2006년에 (구)산림법이 폐지됨 에 따라 법적 근거가 사라짐 |

- 현재 도 내 공유임야에 대해 별도의 조례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하는 곳은 4곳(도, 밀양, 산청, 거창)으로 대다수의 시군이 제정하지
않았거나 폐지한 상태임

□ 주요 내용

- 지금까지 공유임야의 사용·수익 허가(대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거창군유임야 관리규정」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과 2009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대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공
유재산 관리가 일원화되었음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과 관련 법

령과 중복으로 명시된 조항이 다수인 「거창군유임야 관리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규정 폐지 후 군유임야 관리 방안

- 행정재산인 군유임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 허가) 제3호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군유임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249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6-126호(2016.12.22.)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 3-249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8. 2. 7.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종류 | 사 업 명 | 위 치 | | 시 행 규 모 | | | | | | 시 행 위 치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읍 | 리 | 등급 | 류별 | 번호 | 연장 (m) | 폭 (m) | 면적 (㎡) | 시점 | 종점 | | |
| 도시 계획 시설 | 도시계획도로 (소로3-249호선) | 웅양 | 죽림 | 소로 | 3 | 249 | 176.0 | 6.0 | 1,288 | 웅양면 죽림리 207-1 번지 | 웅양면 죽림리 143-1 번지 | 거창군고시 제2016-126호 (2016.12.22)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19. 06. 30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3-249호선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권리명 | 권리자 | |
| 합계 | - | - | - | 16,442 | 1,288 | | | | | |
| 1 | 죽림리 | 207-1 | 대 | 271 | 271 | | 거창군 | | | |
| 2 | 죽림리 | 203 | 대 | 258 | 29 | | “ | | | |
| 3 | 죽림리 | 163 | 대 | 436 | 93 | | “ | | | |
| 4 | 죽림리 | 160 | 전 | 2,109 | 160 | | “ | | | |
| 5 | 죽림리 | 158-3 | 대 | 352 | 133 | | “ | | | |
| 6 | 죽림리 | 151-2 | 대 | 211 | 29 | | “ | | | |
| 7 | 죽림리 | 150 | 전 | 245 | 32 | | “ | | | |
| 8 | 죽림리 | 145-6 | 대 | 475 | 120 | | “ | | | |
| 9 | 죽림리 | 145-3 | 대 | 833 | 98 | | “ | | | |
| 10 | 죽림리 | 143-1 | 전 | 657 | 128 | | “ | | | |
| 11 | 죽림리 | 162-2 | 대 | 241 | 31 | | “ | | | |
| 12 | 죽림리 | 159 | 과 | 2,547 | 17 | | “ | | | |
| 13 | 죽림리 | 148-2 | 전 | 102 | 102 | | “ | | | |
| 14 | 죽림리 | 148 | 창 | 2,480 | 5 | | “ | | | |
| 15 | 죽림리 | 146-4 | 대 | 1,925 | 29 | 전남 목포시 옥암로 ** | 김*섭 | | | |
| 16 | 죽림리 | 146-6 | 대 | 3,300 | 11 | 전남 목포시 옥암로 ** | 김*섭 | | | |

5.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지정(변경)·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08-51호(2008.10.22.)로 지정되고, 거창군 고시 제2010-22호(2010.05.04)로 지정(변경)·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11-108호(2011.12.23), 제2012-72호(2012.06.29), 제2012-118호(2012.10.30)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기업지원과(☎055-940-3363)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 02. 14.

거 창 군 수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일반)(변경 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20번지 일원(변경)
- 면 적 : 42,297㎡ → 42,353.6㎡ (증 56.6㎡)(변경)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지역산업의 육성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 거창군수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3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거창군)

5.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 C10. 식료품제조업, C11. 음료제조업, C24. 1차 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6.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 구 분 | 면 적(㎡) | | | 구성비(%) | 비 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34,612 | 증)77.5 | 34,689.5 | 100.0 | |
|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1차 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 34,612 | 증)77.5 | 34,689.5 | 100.0 | |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 구 분 | 면 적(m ²) | | | 구성비(%) | 비 고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 계 | 42,297 | 증)56.6 | 42,353.6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34,612 | 증)77.5 | 34,689.5 | 81.9 | |
| 공공시설용지 | 3,653 | 감)20.9 | 7,664.1 | 18.1 | |
| 도 로 | 2,967 | 감)100.4 | 2,866.6 | 6.8 | |
| 배 수 지 | 242 | 증)66.1 | 308.1 | 0.7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증)41.4 | 41.4 | 0.1 | |
| 주 차 장 | 121 | 증)8.9 | 129.9 | 0.3 | |
| 구 거 | 323 | 감)13.6 | 309.4 | 0.7 | |
| 녹 지 | 4,032 | 감)23.3 | 4,008.7 | 9.5 | |

○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변경)

○ 총괄표(변경)

| 류 별 | 합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 노선수 | 연장(m) | 면적(m ²) | 노선수 | 연장(m) | 면적(m ²) | 노선수 | 연장(m) | 면적(m ²) | 노선수 | 연장(m) | 면적(m ²) | |
| 합계 | 기정 | 2 | 991 | 11,763 | 1 | 720 | 7,988 | - | - | - | 1 | 271 | 3,775 |
| | 변경 | 2 | 1,061 (285) | 12,239 (2,517.6) | 1 | 790 (285) | 8,464 (2,517.6) | - | - | - | 1 | 271 | 3,775 |
| 중로 | 기정 | 1 | 271 | 3,775 | - | - | - | - | - | - | 1 | 271 | 3,775 |
| | 변경 | 1 | 271 | 3,775 | - | - | - | - | - | - | 1 | 271 | 3,775 |
| 소로 | 기정 | 1 | 720 | 7,988 | 1 | 720 | 7,988 | - | - | - | - | - | - |
| | 변경 | 1 | 790 (285) | 8,464 (2,517.6) | 1 | 790 (285) | 8,464 (2,517.6) | - | - | - | - | - | - |

* ()안은 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3 | 50 | 12 | 집산 도로 | 271 (-) | 가조석강 1413 | 가조석강 1413 | 일반 도로 | 석강2 농공단지 | 거고22호 ('10.5.6) | |
| 기정 | 소로 | 1 | 67 | 10 | 집산 도로 | 720 | 석강리 1413 | 석강리 660 | 일반 도로 | - | 거고22호 ('10.5.6) | |
| 변경 | 소로 | 1 | 67 | 4~10 | 집산 도로 | 790 (285) | 가조석강 1413 | 가조석강 1426 | 일반 도로 | - | | |

※ ()안은 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m ²)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 경 | - | 주차장 | 가조면 석강리 1428 | 121 | 증)8.9 | 129.9 | 거고22호 ('10.5.6) | |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m ²)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 경 | - | 녹지 | 완충녹지 | 가조면 석강리 1249 일원 | 4,032 | 감)23.3 | 4,008.7 | 거고22호 ('10.5.6) | |

4)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m ²)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 경 | - |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 가조면 석강리 1426 | 242 | 증)66.1 | 308.1 | 거고22호 ('10.5.6) | |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 기 정

- 공동이용시설은 석강 농공단지의 시설을 이용토록 계획하여 석강 제2농공단지내에 계획은 없음.

○ 변경

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 단지내도로 : 285m(폭 4~10m), 배수지 1기, 비점오염원처리시설 1개소

나. 오수처리장 현황(비점오염원처리시설, 가조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부지면적 : 41.4m²
- 규 모 : 3,835m³/일
- 사 업 비 : 41백만원
- 처리방법 : 여과형 시설

다. 용수공급 및 배수장 현황

- 부지면적 : 308.1m²
- 배수지용량 : 300m³/일
- 사 업 비 : 123백만원
- 용수공급 : 지방상수도 연결(공업용수 699.4m³/일, 생활용수 14.2m³/일)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붙임(변경)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m ²) | | | 최 초 결정일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 | 석강제2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 | 가조면 석강리 1420 일원 | 42,297 | 증)56.6 | 42,353.6 | 거고22호 (10.05.0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변경 | - | 가조면 석강리 1420 일원 |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42,297㎡ → 42,353.6㎡ 증)56.6㎡ | ·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도 로(변경)

총괄표(변경)

| 류 별 | 합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
| 합계 | 기정 | 2 | 991 | 11,763 | 1 | 720 | 7,988 | - | - | - | 1 | 271 | 3,775 |
| | 변경 | 2 | 1,061 (285) | 12,239 (2,517.6) | 1 | 790 (285) | 8,464 (2,517.6) | - | - | - | 1 | 271 | 3,775 |
| 중로 | 기정 | 1 | 271 | 3,775 | - | - | - | - | - | - | 1 | 271 | 3,775 |
| | 변경 | 1 | 271 | 3,775 | - | - | - | - | - | - | 1 | 271 | 3,775 |
| 소로 | 기정 | 1 | 720 | 7,988 | 1 | 720 | 7,988 | - | - | - | - | - | - |
| | 변경 | 1 | 790 (285) | 8,464 (2,517.6) | 1 | 790 (285) | 8,464 (2,517.6) | - | - | - | - | - | - |

※ ()안은 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3 | 50 | 12 | 집산 도로 | 271 (-) | 가조석강 1413 | 가조석강 1413 | 일반 도로 | 석강2 농공단지 | 거고22호 ('10.5.6) | |
| 기정 | 소로 | 1 | 67 | 10 | 집산 도로 | 720 | 석강리 1413 | 석강리 660 | 일반 도로 | - | 거고22호 ('10.5.6) | |
| 변경 | 소로 | 1 | 67 | 4~10 | 집산 도로 | 790 (285) | 가조석강 1413 | 가조석강 1426 | 일반 도로 | - | | |

※ ()안은 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1-67호선 | 소로1-67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 - 10.0m → 4.0~10.0m • 연장 - 720m → 790m (단지내 285m) • 종점 - 가조석강 660 → 가조석강 14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지 진입을 위한 도로(B=4.0m)가 도시계획도로로 미결정되어 있어, 금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폭원 및 연장 변경 •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종점 변경 |

□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 | 주차장 | 가조면 석강리 1428 | 121 | 증)8.9 | 129.9 | 거고22호 ('10.5.6)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변경 - 121m² → 129.9m² 증)8.9m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

□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 | 녹지 | 완충녹지 | 가조면 석강리 1249 일원 | 4,032 | 감)23.3 | 4,008.7 | 거고22호 ('10.5.6)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녹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변경 - 4,032m² → 4,008.7m² 감)23.3m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

□ 수도공급설비(변경)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 |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 가조면 석강리 1426 | 242 | 증)66.1 | 308.1 | 거고22호 ('10.5.6) | |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 · 면적 변경 - 242m ² → 308.1m ² 증)66.1m ² | ·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m ²) | 획지 | | | 비고 |
|-------|-------|---------------------|----|--------------|---------------------|----|
| | | | 번호 | 위치 | 면적(m ²) | |
| 합계 | | 34,689.5 | - | - | 34,689.5 | - |
| - | A1 | 17,184.6 | 1 | 가조면 석강리 1420 | 6,303.9 | |
| | | | 2 | 가조면 석강리 1421 | 5,605.7 | |
| | | | 3 | 가조면 석강리 1422 | 5,275.0 | |
| - | A2 | 17,504.9 | 1 | 가조면 석강리 1430 | 5,487.3 | |
| | | | 2 | 가조면 석강리 1431 | 5,529.0 | |
| | | | 3 | 가조면 석강리 1432 | 6,488.6 | |

■ 변경 사유서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위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A1 A2 | 가조면 석강리 1420 일원 | · 가구 및 획지조서 작성 | ·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A1 A2 | 용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 | 건폐율 | • 60%이하 |
| | | 용적률 | • 150%이하 |
| | | 높 이 | • 4층 이하 |

■ 변경 사유서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 | A1 A2 | · 건축물 등 조서 작성 | ·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거창군청 기업지원과(055-940-33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관련도서 게재생략). 끝.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연번 | 행정구역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비고 |
|----|-------------|------|----|----------|----------|--------------------|----|
| | | | | 대장 | 편입 | | |
| 합계 | | | | 42,353.6 | 42,353.6 | | |
| 1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 1418 | 수 | 41.4 | 41.4 | 거창군 | |
| 2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 1419 | 도 | 349.0 | 349.0 | 거창군 | |
| 3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 1420 | 장 | 6,303.9 | 6,303.9 | 주식회사 혜성종합식품 | |
| 4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 1421 | 장 | 5,605.7 | 5,605.7 | 주식회사 지에프에스 | |
| 5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 1422 | 장 | 5,275.0 | 5,275.0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부일농산 | |
| 6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 1423 | 구 | 42.2 | 42.2 | 거창군 | |
| 7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 1424 | 구 | 267.2 | 267.2 | 거창군 | |
| 8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 1425 | 공 | 1,524.2 | 1,524.2 | 거창군 | |
| 9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 1426 | 수 | 308.1 | 308.1 | 거창군 | |
| 10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 1427 | 도 | 2,517.6 | 2,517.6 | 거창군 | |
| 11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 1428 | 차 | 129.9 | 129.9 | 거창군 | |
| 12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 1429 | 공 | 2,484.5 | 2,484.5 | 거창군 | |
| 13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 1430 | 장 | 5,487.3 | 5,487.3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부일농산 | |
| 14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 1431 | 장 | 5,529.0 | 5,529.0 | 주식회사 지에프에스 | |
| 15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 1432 | 장 | 6,488.6 | 6,488.6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동성 |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2. 14.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730 등 2건(부여 2)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 비고 |
|-------------|-------|--------|-----------------|----|
| (별 도 열 람)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 일련 번호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고 시 일 |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 | | 도로명 | 도로명주소 | | |
| 1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762-13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730 | 2009-07-10 | 2018-02-07 | 지리적 위치 반영 영남의 서부 | |
| 2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103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287 | 2009-12-28 | 2018-02-07 | 1994년 거창읍시가지 간선도로명 결정에서 유래 | |

거창군 거창읍 고시 제2018 - 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거 창 군 수

| | | | |
|------------------|---------------------------------------------|----|------------------------|
| 하천의 명칭 (하천등급) | 거창위천(지방하천) | | |
| 점용자의 성명 | 원상동마을이장 조동희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8길 27 |
|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에 따른 점용 | | |
|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50번지, A=330.0m ² | | |
|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년 2월 25일부터 2018년 3월 3일까지(7일간) | |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2. 09.

거 창 군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2. 09. ~ 2018. 02. 26.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가. 내동5 태양광발전소

| 구분 | | 양 도 인 | 양 수 인 |
|---------------------------------------|---------|-----------------------------|---------------------------------------------|
|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8 -11호) | 발전소명 | 내동5 태양광발전소 | |
| | 대 표 자 | 김 미 속 | 이 지 성 |
| |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옥지면 옥지일주로 91-9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66 102-1102호 (거창코아루에듀시티) |
| | 설치장소 | 경남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56-1 (토지위) | |
| | 설비용량 | 99.4kW(사업허가 용량) | |
| | 허가일자 | 2018. 01. 10. | |
| | 양수(예정)일 | 2018. 02. 09. | |

나. 내동6 태양광발전소

| 구분 | | 양 도 인 | 양 수 인 |
|---------------------------------------|---------|-----------------------------|--------------------|
|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8 -12호) | 발전소명 | 내동6 태양광발전소 | |
| | 대 표 자 | (주)현대에코솔라 대표 김동일 | 백 영 속 |
| | 소 재 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시장2길 9, 3층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197 |
| | 설치장소 | 경남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56-1 (토지위) | |
| | 설비용량 | 99.4kW(사업허가 용량) | |
| | 허가일자 | 2018. 01. 10. | |
| | 양수(예정)일 | 2018. 02. 09. | |

다. 내동7 태양광발전소

| 구분 | | 양 도 인 | 양 수 인 |
|---------------------------------------|---------|-----------------------------|-------------------------------------|
|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8 -13호) | 발전소명 | 내동7 태양광발전소 | |
| | 대 표 자 | 김 동 일 | 최 재 선 |
| | 소 재 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주곡로 499, 2층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 5길 86 1002호 (아진파크) |
| | 설치장소 | 경남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56-1 (토지위) | |
| | 설비용량 | 99.4kW(사업허가 용량) | |
| | 허가일자 | 2018. 01. 10. | |
| | 양수(예정)일 | 2018. 02. 09. | |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끝.

2018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모집 재공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식생대의 변화로 다양화하는 산림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2월 9일

거 창 군 수 (인)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거창군 실 거주자
3.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체력검사)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18. 2. 9.(금) ~ 2. 15.(목) / 7일간
 - 접수기간: 2018. 2. 13.(화) ~ 2. 15.(목) / 3일간
 - ※ 2018. 2. 15.(목)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우편 도착분에 한함.
5. 면접 일시 및 장소 : 2018. 2. 19.(월) 군청 중회의실 10:00~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주 소: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산림과
 - 방 문: 거창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55-940-3474)
 -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7. 신청서류
(필 수)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 참여 신청서 1부(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소정양식)
 - 경력 및 이력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채용 신체검사서 1부(국 · 공립의료기관에서 발급)-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서상 “이상” 판정 결과가 있을 경우 사역이 불가함.

(가산점 해당자 첨부서류 : 대상자에 한함)

- 산림관련 경력증명 확인서, 교육이수 증명서, 자격증 사본
- 운전면허증, 각종 장비관련자격증 사본
- GPS, GIS 및 한글, 엑셀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8. 근무조건

가. 모집분야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나. 사역기간 : 2018. 3월 ~ 12월(예산범위 내)

다. 인 건 비 : 반장 68,000원/일, 반원 65,000원/일

※ 간식비등 일체 부대경비 포함된 금액임.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필요한 경우 공휴일 근무 및 근무시간 조정)

마. 기타수당

- 1주간 개근자 : 1일의 주차수당 지급

- 1개월간 개근자 :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가입

9.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개별통보) : 2018. 2. 17.(토)

나. 2차 면접시험(개별통보) : 2018. 2. 19.(월)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보) : 2018. 2. 21.(수) 예정

10. 사업내용(해당업무)

가. 산림병해충 예찰(재선충병 피해목등)

: 피해목 조사, 감염목 표시, 시료채취, 피해구역도 작성등

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등 방제작업

: 기계톱 사용벌채, 벌채목 운반 및 집재, 훈증 및 파쇄작업등

다. 각종 방제작업 장비 관리 및 방제단 차량운전, 차량유지관리

- 라. 돌발해충 발생조사 및 긴급방제 작업 투입
- 마.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업무지원 및 보조등
- 바.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 사.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진화작업 투입(재난으로 인한 긴급시)

11. 고용조건

- 가. 고용조건 일체는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과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운영합니다.
 - 중복참여 제한
 - 반복참여 제한: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 등
- 나. 본 예찰방제단은 매년 산림병해충 발생상황등에 따라 운영여부 및 규모 결정되는 일시적 사업으로 다음해 재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고용시에는 반드시 우리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미 이수시 사역중단 조치)
- 라. 신청자가 많은 경우 아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술교육 과정을 수료한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산림관련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중등교육기관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산림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마. 사업중 상습음주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태만과 작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와 작업근무 방해자 등은 사역을 강제 사역중단 조치하며 특히 고의로 산업재해를 일으켜 산재보험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며 향후 우리시의 각종 사업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12. 기타사항

- 가.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55-940-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 참여 신청서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 (신청일자 : 2017.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 | | |
| 이메일주소 |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 |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 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 | | 동의() 미동의() | | |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 | 명 | |
| 학 력 | 학 교 명 | | 전 공 | 재 학 기 간 | | 비 고 |
| | 고등학교/대학교 | | | | | |
| | 대학원 | | | | | 수료/학위취득 |
| 주 요 경 력 | 직 장 명 | | 담 당 업 무 | | 재 직 기 간 | |
| | | | | | | |
| | | | | | | |
| 자 격 증 또는 관 련 교 육 이 수 여 부 | 자 격 증 / 교 육 명 | | | 취 득 / 수 료 시 점 | | |
| | | | | | | |
| | | | | | | |
| 장 비 사 용 및 차 량 구 비 여 부 | GPS 기기 | | 사용가능 () | | 사용경력 없음() | |
| | 엔진톱, 예취기 등 | | 사용가능 () | | 사용경력 없음() | |
| | 차량 구비여부 | 4륜 차량() | | 2륜 차량() | 없음 () | |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 | | | | | |

- ① 본 신청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 취업취약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1.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 | 본인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
| |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
| |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
| |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
| |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
| |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
| |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

20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경 력 및 이 력 부

| | | | | |
|-------------------|--------------|--|-----|------------------|
| 성 명 | 한 글 | | | 사 진 (3 * 4cm) |
| | 생년월일 | | | |
| 연 락 처 | | | 주 소 | |
| 주요이력 (교육사항 포함) | | | | |
| 소지 자격증 | | | | |
| 고 용 기 간 | 해당 지원 분 야 | | | |
| | 기 타 산림사업 | | | |
| 기 타 | | | | |

※ 교육사항은 수료증 사본,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첨부

※ 신청자격 제한(공통사항)

-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 (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 다만, 2018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 사업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 ※ 최근3년 기준, 1년간 미참여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의 노력이 확인되어야 신청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최종 수급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
 - ※ 반복참여와 관련하여 만 65세 이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능력, 질병정도, 가족사항(돌봄대상 가족)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 ※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시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 타 일자리사업에 중복적으로 참여한 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거나 2억원 이상 재산을(토지·건축물·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된 가구의 구성원(순 자산 2억원 미달일 경우 신청자가 직접 공증서류 제출)

< 가구원수별 '18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

(단위: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중위소득60% | 1,672,000 (기준중위소득 100%) | 1,708,000 | 2,210,000 | 2,712,000 | 3,213,000 | 3,715,000 |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 군인 · 사학연금 수령자

위의 제한사항은 일모아시스템을 확인 및 조회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 3 - 164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64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02. 09.

거창군수

1. 사업시행 개요

| 종류 | 명칭 | 위치 | | 시행규모 | | | | | | 시행구간 | 최초결정일 | 사업기간 |
|--------|-----------------------|----|----|------|----|-----|-------|------|---------------------|-----------------------------------|--------------------------------|-----------------------------------------|
| | | 읍 | 리 | 구분 | 류별 | 번호 | 연장(m) | 폭(m) | 면적(m ²) | | | |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도로 (소로3-164호선) | 거창 | 동변 | 소로 | 3 | 164 | 266.0 | 6.0 | 2,262 | 거창읍 동변리 226 ~ 거창읍 동변리 65-18 | 거창군고시 제2002-25호 (‘02.06.10)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19. 12. 30. |

2. 사업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 3-164호선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권리명 | 권리자 | |
| 합계 | - | - | - | 61,178 | 2,262 | | | | | |
| 1 | 거창읍 동변리 | 65-18 | 대 | 244 | 18 | 거창읍 동변길 ** | 김*남 | | | |
| 2 | " | 72-2 | 도 | 241 | 58 | 264 | 윤*욱 | | | |
| 3 | " | 72-3 | 전 | 50 | 24 | 264 | 윤*욱 | | | |
| 4 | " | 72-4 | 도 | 38 | 38 | | 거창군 | | | |
| 5 | " | 226 | 전 | 1,375 | 146 | 거창읍 동변리 ** | 이*길 | | | |
| 6 | " | 226-3 | 전 | 171 | 31 | - | 거창군 | | | |
| 7 | " | 227-1 | 도 | 126 | 2 | - | 거창군 | | | |
| 8 | " | 228 | 전 | 99 | 12 | 229 | 이*조 | | | |
| 9 | " | 247-1 | 대 | 66 | 66 | 216 | 신창표씨 모제영상공파종중 | | | |
| 10 | " | 247-2 | 대 | 331 | 137 | | 거창군 | | | |
| 11 | " | 265-3 | 답 | 115 | 35 | 거창읍 동변1길 ** | 이종성 | | | |
| 12 | " | 265-4 | 도 | 8 | 8 | | 거창군 | | | |
| 13 | " | 266 | 전 | 7,294 | 182 | | 거창군 | | | |
| 14 | " | 267 | 대 | 1,362 | 377 | | 거창군 | | | |
| 15 | " | 267-5 | 대 | 595 | 274 | | 거창군 | | | |
| 16 | " | 271-4 | 대 | 512 | 54 | 거창읍 동변1길 ** | 이*성 | | | |
| 17 | " | 271-8 | 도 | 182 | 182 | | 거창군 | | | |
| 18 | " | 271-9 | 대 | 48 | 48 | | 거창군 | | | |
| 19 | " | 1160-30 | 구 | 21,746 | 30 | - | 국토교통부 | | | |
| 20 | " | 1164-2 | 도 | 6,588 | 176 | - | 국토교통부 | | | |
| 21 | " | 1164-8 | 대 | 5 | 1 | - | 기획재정부 | | | |
| 22 | " | 산246-1 | 임 | 2,472 | 244 | | 거창군 | | | |
| 23 | " | 산246-11 | 임 | 948 | 32 | | 거창군 | | | |
| 24 | " | 산247-8 | 임 | 13,686 | 51 | 216 | 신**씨 종중 | | | |
| 25 | 거창읍 서변리 | 1168 | 구 | 2,876 | 36 | - | 농림수산식품부 | | | |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5),

FAX(055-940-3579), E-mail : changu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5292호, 2017.12.26)에 따라 1년에 7월, 9월 2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가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납세편의를 제고함.

2. 주요내용

-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 확대 (안 제14조)
 - 부과기준세액 :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3. 개정 조례안: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재무과
- 전화: 940-3271, 팩스: 940-3219, 이메일: ekpark9216@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
| <p><u>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u> <u>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u> <u>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u> <u>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u> <u>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u> <u>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u> <u>할 수 있다.</u></p> | <p>제14조(납기) ----- ----- ----- -- <u>20만원</u> ----- ----- ----- -----.</p> |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2. 13.

거 창 군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2. 13. ~ 2018. 02. 28.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가. 내동5 태양광발전소

| 구분 | | 양 도 인 | 양 수 인 |
|--------------------------------------|---------|-------------------------------------------|----------------------------------|
|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8 -5호) | 발전소명 | 브이 태양광발전소 | 조은 태양광발전소 |
| | 대 표 자 | 신 중 진 | 공 영 속 |
| | 소 재 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 6길 99, 101동 503호 (베어스타운)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길 118, 402호 (용산동) |
| | 설치장소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358, 359-2 (토지위) | |
| | 설비용량 | 99kW(사업허가 용량) | |
| | 허가일자 | 2018. 01. 10.(최초) | |
| | 양수(예정)일 | 2018. 02. 13. | |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끝.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남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함에 따라, 감면 축소 및 시한연장 등 이 조례 중 군세의 감면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한 2018. 12. 31일까지 연장 (안 제2조제1항)
-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한 2018. 12. 31일까지 감면 연장(안 제4조)
- 재산세 감면시한 2018. 12. 31일까지 감면 연장(안 제5조, 안 제7조, 안제9조)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감면 축소 (100분의 100 에서 100분의 50)(안 제8조)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추가(안 제10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 670-807)이나 메일(dean306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

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
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
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
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
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
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군·구의 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의 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군·구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면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납부자 불명으로 장기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우리 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18. 2. 8. ~ 2018. 2. 23.(15일간)
- 3. 공시송달 현황

| 현금종류 | 수납일자 | 납부자 | 적 요 | 귀속금액 |
|---------------|---------------------------------|------|------|------------|
| 잡종금기타 - 기타 | 1993. 08. 16. ~ 2012 12. 31. | 확인불가 | 확인불가 | 6,053,930원 |

-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
-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일 경우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창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6. 기타 문의사항 : 거창군 가조면사무소 총무담당 (☎ 055-940-7812)

2018년 2월 8일

거창군 가조면장